

# 서울특별시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2023.8.10.)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li> <li>※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li> </ul>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공공감사담당관	감사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시 감사계획</li> <li>※감사 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li> </ul>	제5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조사담당관	※상기부서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 업무(감사 기법) 개선안</li> </ul>	제5호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지도)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li> </ul>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무점검 등) 불시 지도점검계획</li> </ul>	제5호	
		청렴시책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 결과 보고서</li> <li>[’18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제6호	내부직원에 관한 조사보고서로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조사업무가 위축되어 공정한 조사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명 등 익명처리 시에도 해당 대상자를 유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음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li> </ul>	제3호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내용</li> </ul>		제6호	공개할 경우 제보자를 유추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li> </ul>	제3호 제6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및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현황</li> </ul>	제5호 제6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조사) 중 관계자 등이 제출한 경위서, 문답서 [’20년 제2차, 제5차/’19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공개 시 진술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 동종의 진상조사 시 진술 청취 및 문서 제출 등의 협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li> </ul>	제6호	공개 시 피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자 진술을 기초하여 이루어진) 서울OO공사 승진시험 관련 시험정보 사전 유출 의혹 조사결과 보고서 [’19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제6호	공사 승진시험에 대한 세부내용과 진술자 성명, 진술내용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공개 시 공사의 시험 관리를 저해하고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고, 진술내용 공개 시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어 향후 동종의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자 진술을 기초하여 이루어진) 서울OO공사 공무국외출장 당시 향응수수관련 민원제보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19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제6호	특정인에 대한 조사내용으로, 해당 조사가 주로 관련자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바, 진술자 성명, 진술내용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익명처리 시에도 진술자를 유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초래될 수 있고 진술내용 공개 시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되어 향후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인 권 담 당 관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결 정·이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신고인 성명, 신고서 [’20년 제8차, 10차 정보공개심의회]</li> <li>●인권침해 신고 신청 및 의뢰 내용 [’21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3호 제6호	비밀을 전제로 신고한 사항이 의도치 않게 공개됨으로써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신고내용만으로도 해당 사건의 신고인을 식별할 수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관련 사건내용, 진행경과, 조치사항 [’20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3호 제5호	비밀을 전제로 신고한 사항이 의도치 않게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3호), 관련된 사항이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지킴이단 구성원 명단 [’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성명 등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시 민 감 사 옴 부 즈 만 위 원 회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li> </ul>	제3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진정인에 대한 조사 내용</li> </ul>	제5호 제6호	공개 시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피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기로 작성된) 민원배심 법정 참석자 명부, 의결서, 검토의견서 [’21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제6호	수기로 작성되어 필적을 통해 개별 위원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동일·유사한 업무 수행 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필적 등 특정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주민·시민감사 청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 진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주민감사 청구사항 접수보고 [’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li> <li>●(감사 진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시민감사 청구사항 접수보고 [’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감사 진행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공개할 경우 증거인명 등 감사 목적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기 획 조 정 실	기획담당관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정 전 연도별 업무계획</li> </ul>	제5호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 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조직담당관	위원회 관리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li> </ul>	제5호	위원확정 전 공개 시 위원선정 과정에 외부 개입이나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어 공정한 위원선정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위원회 등 회의 녹음파일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제6호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발언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위원회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향후 동일유사한 위원회 진행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위원회 심의 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제5호	공개 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정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내역	제6호	수당 지급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서울시 위원회 일반시민 공모 위원별 채점결과 [’14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타인 채점표는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결과가 담겨져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조직 및 정원관리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에 관한 의견 [’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인사관리 및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총괄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시설 소속 직원 호봉 [’20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의 호봉에 관한 사항은 임금책정을 위한 기본정보로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연봉을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위탁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 산출내역 [’20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7호	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산출내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경영·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유지 민간위탁업체 근무일지 [’17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업체의 인력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위탁업체 출납장부 [’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위탁업체 운영장부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연구담당관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무 발명의 출원 전 발명의 내용에 관한 정보</li> </ul>	제1호	발명진흥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후에는 5호 사유가 해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가능</li> </ul>	제5호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음
법무담당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②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③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④ 그 밖에 공개 시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ul>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피청구인 진술 녹취록 [’18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의사록 [’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시행령 제29조
	법령 제·개정 관련 법률검토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안 확정 전) 법률 개정안 등 검토의견</li> </ul>	제5호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률지원담당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 소장</li> </ul>	제4호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임 ※재판 확정 후 공개여부 재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구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답변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송 진행상황 보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송 대응방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거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비서면</li> </ul>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법률자문 결과	제6호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는 공개 시 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소송 상대방 개인의 소송수행 내역, 변호사 선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사실조회 결과		
		•조서		
		•서울특별시와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중 확정된 소송의 사건번호 [’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서울특별시가 원고·피고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소송 현황 [’16년 제4차, ’15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진행 중 또는 종결된 소송의 사건번호, 소송물, 당사자, 소송액, 소송사유는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중요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확정되지 않은 소송의) 항소방침 중 항소 이유, 패소원인 분석표, 항소제기 의견서 [’18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4호
	법률자문 및 시정관련 중요사항 법률지원	•서울시 채용 변호사별 담당사건 [’15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제4호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별 담당내용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 수행 업무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임
		•외부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내부법률자문 결과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	제5호	자문결과가 공개되면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음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방문상담 변호사 인적사항 [’13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예산담당관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의회 제출 전) 확정되지 않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내역	제5호
재정담당관	시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미확정된) 투자사업 심사분석 의뢰서 [’18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해당 사업에 대한 잠정적인 분석결과 및 각 기관의 검토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공 기 업 담 당 관	투자·출연기관 의 경영평가		●서울특별시-투자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에 대한 외부 자문내용 중 외부전문가 성명 [’20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외부전문가 성명을 공개할 경 우 향후 자유로운 의사 개진 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공 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서울시 출입기자의 직책, 연락처, 메일주소 [’16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임
홍 보 기 획 관	홍보담당관	대시민소통계획 수립·총괄 조정	●사업별 미확정된 홍보계획 ●미확정된 다음 년도 홍보계획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 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민원담당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총괄	●민원상담 녹취록 [’15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민원내용 공개 시 자신의 발 언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 으로 민원인의 자유로운 상담 발언이 저해되는 등 상담업무 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음
			●제3자 특정인이 본인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내용 [’19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 더라도 민원내용을 통하여 특 정인을 유추할 수 있어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음
			●여권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 을 해할 수 있음
			●120 다산콜재단 지원 및 지도감독 [’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양 성 평 등 담 당 관	성폭력·가정폭 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상담· 자활 지원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 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제3호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 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 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 을 초래할 수 있음
			●성희롱·성폭력조사 신청 확인 및 인정사실, 결과통보 ●조사협의체 구성협조, 관계자 조사 내용, 진술서 및 문답서 ●전문가 의견조회 및 검토 의견 ●피해자 보호(가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 지원 자료 ●행위자 교육 및 후속조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자, 상담 내용, 조치 결과	제5호 제6호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 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 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장 내 성희롱 사건 내용, 관련자 직위 등 [’20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3호 제6호	비밀을 전제로 신고한 사항이 의도치 않게 공개됨으로써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아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련 내용만으로도 당사자를 식별할 우려가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 명단, 회의 녹음 파일, 위원 발언 및 의견표명 자료, 의결서, 수당지급 내역</li> </ul>	제5호 제6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개인 수당 지급 내역은 개인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가족담당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보호필요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상담원 근무일지 [’1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피해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영유아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어린이집 민원 내용 [’13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민원내용의 개인이름을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민원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경우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 민원과 관련된) 어린이집 점검결과 [’14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점검대상 기관의 민감한 경영·영업에 관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여 공개 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노동정책기획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공개 동의가 없는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li> </ul>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단서”
		노사 간 쟁의 예방·해결 협조 및 노사화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위원회에서 비공개 의결한 노동위원회 회의록</li> </ul>	제1호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소상공인담당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li> </ul>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생경제보호전문요원 채용시험 면접시험성적</li> </ul>	제5호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특수거래 및 선불식할부 거래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대표의 범죄경력 내용, 범죄경력 조회 결과 [’19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민간업체 대표의 범죄경력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의 분석자료 중 카드회사 매출데이터 [’19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매출액에 관한 부분은 카드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내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함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을지연습 충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가자 조직구성 및 역할 분장 등을 포함하는 세부일정</li> </ul>	제2호	<p>을지연습의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 시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p> <p>※단순 전달사항, 참가기관 통계, 사건계획 작성 지침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p>		
			●참가기관명				
			●사건·실시계획				
			●기본계획				
			●사건메시지				
			●처리결과			제2호	<p>을지연습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공개 시 훈련의 내용과 전말을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p>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민방위 및 예비군 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li> </ul>	제2호	<p>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p> <p>※직장 내 민방위 및 예비군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p>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비축물자 보관장소	제2호	공개 시 전시에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전시인력동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전시에산 편성의 세부내역	제2호	공개 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전시 인력동원 계획						
	●전시 소방대책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지하종합상황실의 유지 및 운영	●시청 지하종합상황실 평면도, 단면도	제2호	국가비상사태 시 충무시설로 활용되는 공간이므로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비상사태대비계획 수립조정	●테러진압 절차	제2호	공개 시 테러행위 등에 이용되어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적자원, 장비 동원 세부계획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제2호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이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는 공개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수집·저장·활용 총괄조정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사업’ 산출물 (‘20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제2호	정보시스템의 상세 설계 및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해당 사항이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될 경우 행정정보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GRDP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자치구별, 항목별 GRDP 시산데이터 (‘17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1호	통계법 제27조의2, 제33조	
			●지번(위치정보)이 포함된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 [‘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1호	통계법 제30조, 제33조	
			●올빼미버스 노선 구축 당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통신 관련 빅데이터 [‘1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7호	정보의 소유권이 정보를 생산한 업체에 있고,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함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안수준평가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 보고서 [‘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2호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시스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행정전자서명(GPKI) 신청 내용	제6호	행정전자서명 신청 시 작성 내용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제5호 제6호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내용 및 보안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기관의 시스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조사	제5호 제6호	개인정보 유출 기관 및 시스템의 보안취약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보 공개 담당관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우편물의 검열 사실 확인자료	제1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비밀기록물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제2호	비밀에 해당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암호자재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비밀취급 인가·해제 요청 및 통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 직인 전자 이미지	제4호	시장 직인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공개 시 이를 위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다른 형태로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음	
공간 정보 담당관	지하시설물 및 지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서울시 지하매설물(배관) 도면 [’21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2호	전력, 통신, 가스, 하수도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테러 등에 노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통신망 경로(IP 대역)	제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신규 통신서비스 제공		
			•정보통신시책수립		
			•통신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정보		
			•통신보안감사에 관한 정보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제2호	기관의 보안 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추가적인 사이버 공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웹메일서버 침해사고 상황보고 자료 [’16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 안전수사대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제3호 제6호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제3호 제6호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제4호	공개 시 증거인멸이나 범죄 예방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모방범죄를 자극하는 등 관련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제4호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참고인 명단	제4호 제6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공정한 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참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불시 수사계획	제4호	공개 시 수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수사 공무원 업무분장	제3호 제4호	수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부 청탁 등으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음
미래 공간 기획관	공공개발 기획담당관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사업제안서 [’17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8호	미확정된 내용의 공개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유발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경제정책실	일자리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 면접관 각각의 점수 [’1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기초보장제도 및 의료급여 운영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지역돌봄 복지과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 및 위기관리대상지원	•긴급지원대상자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정보	제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1호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실태조사 매뉴얼 [’14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조사의 특성상 공개 시 향후 동종의 인권실태 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명단 [’21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제3자의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현황 [’20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신상정보는 개인민감정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거주시설 긴급분리 조치대상자 [’20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보호자 연락처 [’20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장애인 보호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소속 직원 호봉 [’20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민간위탁시설 직원의 호봉에 관한 사항은 임금책정을 위한 기본정보로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연봉을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학대 여부 실질조사 결과 [’20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인권침해 의심 장애인시설 기획조사 및 조치 [’20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제6호	요청 정보에 포함된 조사기법, 진술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여 익명 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활지원과 노숙인 주거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지원사업의 사업별 주택 주소, 주소지별 공급호 및 세대수 [’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공개 시 주거지원 대상자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도 시 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나눔카 서비스 운영현황 [’14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나눔카 서비스는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요청 정보는 민간사업자의 실적 등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노선시설 관련 의견 [’20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노선신설에 대해 관계 기관간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요청 정보를 공개할 경우 내부검토 단계의 미확정된 사안의 공개로 시민들에게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노선신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b>●공항버스 노선변경안 협의 및 의견</b> [’17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노선조정안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공개할 경우 노선변경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8호	미확정된 내용의 공개로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시내·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b>●버스회사 임원의 개인별 연봉</b> [’17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민간업체의 임원의 연봉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부 식별정보 제외 시에도 개인을 추정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
택시정책과	택시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	<b>●택시법인별 부가가치세 환급금 현황</b>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b>●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기록 일체</b> [’17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7호	해당 시스템은 민간회사가 자체예산 및 기술력으로 구축·운영 중으로, 수집항목 자체는 운영사의 독창적인 기술사항에 해당하며, 시스템 내 수록된 정보는 각 운송업체의 차량별 운행정보, 수입정보 등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자동차수송동원 계획에 관한 사항	<b>●총무4700 교통실시계획(안)</b>	제2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비밀문서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해할 우려가 있음
물류정책과	유통단지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b>●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b>	제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 확정 전) 도시첨단물류단지 및 R&amp;D 복합개발 계획 [’21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계획 확정 전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러 일으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통정보과	교통상황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 [’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2호	교통정보 DB명 및 DB table 명세는 중요한 대시민 서비스 관련 정보로, 데이터의 조작 또는 손실시 교통 혼란 등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개될 경우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 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함
문 화 분 부	문화정책과	종교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법인 회원 명부</li> </ul>	제6호	단체의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개인의 신념 등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교법인 기본재산 상세목록 [’15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법인의 재산목록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문화재관리과	도성 및 성문 보수 복원 및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양도성정비복원공사 준공수리 보고서 중 군부대 시설물 현황 및 위치</li> </ul>	제2호	군부대 시설물 현황 및 위치는 국가안보 및 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기 후 환 분 부	대기정책과	석면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면피해 구제자 명단 [’13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석면피해 구제자 명단은 석면피해 인정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질병명 등이 수록된 개인 민감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 양도양수 관련 협약 [’14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자원회수시설추진반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회수시설 운영관련 제보사항 조사계획 [’19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p>※조사가 종료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비공개(비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및 개인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p>	제5호	공익신고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할 경우 조사업무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회수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 산출내역 [’20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산출내역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로 공개할 경우 당해 법인의 경영·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발주 전 작성된)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 관련 제안요청서(안), 원가계산서, 협약서(안) [’20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향후 입찰 공고 및 위탁자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 미확정 내부검토 중인 제안요청서(안), 원가계산서, 협약서(안)이 공개될 경우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업체 계좌정보 [’18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은행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통장사본)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업체가 제출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계획 [’18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관리운영계획은 업체의 독창적인 기술, 노하우 및 운영방안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행정국	총 무 과	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청 인터넷 전화 보안업무 (보안인증, 취약점, 보안패치, 보안성 검토)</li> </ul>	제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 개연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국가정보통신 IP응용 서비스 (인터넷전화) 사업자 선정 관련 사업자별 평가점수, 기술평가 (실적평가), 가격평가 결과 [’13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타사의 사업실적 및 영업전략 등이 유추가능한 정보로 공개 시 해당 업체의 영업상의 지위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업체명을 가린다 하더라도 기 공개된 타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업체를 유추할 개연성이 있음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숙소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li> </ul>	제2호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대통령 및 해외 주요 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청사방호·청원 경찰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 본관, 별관, 신관 설계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16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li> <li>●서울시 청사 내 보안시설 (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li> <li>●청사 경비 초소 위치</li> </ul>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청사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인 사 과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당직명령부 [’13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2호	청사관리(방호)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제5호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회의록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발언내용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위원 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제5호	위원명단 공개 시 추후 인사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개인의 징계내역, 징계심의 의결내용 [’21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징계 혐의 자료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징계 대상자의 성명, 부서, 징계일자, 구체적인 비위내용 및 징계내용 [’20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채용후보자 명부	제6호	개인의 민감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신원조사 결과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승진심사 관련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 [’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위원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저해되는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공무원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b>확정 전 공무원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및 자료</b>	제5호	확정 전 공개 시 외부청탁 등으로 공정한 인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사기록 관리	● <b>학력 및 경력</b> ※전문 임기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검증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 가능	제6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b>비위공무원 인적사항</b>				
● <b>퇴직사실 확인</b>				
● <b>인사기록카드</b>				
● <b>범죄사실 기록</b>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b>소속 공무원의 주요 근무이력</b> [’17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b>특정공무원의 보직경로</b> [’17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공개 시 당사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b>특정공무원의 임용일 및 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징계, 임용 및 근무경력</b> [’17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각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무원의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	● <b>인사교류신청</b>	제6호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 <b>개인에 대한 평가기록</b>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 <b>개인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휴직 사유 및 휴가지</b>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가능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공무원의 보수·연금에 관한 사항	● <b>급여 및 수당내역</b>	제6호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소득 및 수당 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청원경찰 관리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 <b>청원경찰 급여 및 수당지급 내역</b> [’20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인력개발과	직원후생복지 증진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제6호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제6호	직무와 무관한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육훈련제도계획의 수립·조정	●개인별 교육훈련 내역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와 무관한 교육훈련 내역까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자치행정과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인감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시민표창에 관한 사항	●확정 전 시민 표창(유공) 예정자 명단	제5호	확정 전 공개 시 외부청탁 등으로 공정한 인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시민협력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총괄	●비영리민간단체 회원명부 [’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단체의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개인의 신념 등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비영리민간단체 수입지출예산서 [’20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7호	수입지출예산서는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 시 상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	●갈등조정 관련 회의록 및 기록물 [’17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사업소 청사 이전 관련 외부용역을 통해 작성된) 갈등보고서 내 대응 시나리오 [’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제5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청사 이전과 관련된 갈등 대응을 위해 작성된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남북협력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남북경제협력 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제2호	공개 시 남북관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국익을 해할 수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북한이탈주민 관리	●북한이탈주민 관련지침	제2호	해당 지침 등이 공개될 경우 정부의 단계별 조치가 노출되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신변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큼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제3호	공개 시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국	재무과	시금고에 관한 사항	●서울시 지정금고 현황 중 이자율 [’13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시정협력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임	제7호	시 금고 입찰과 관련된 업체의 영업전략으로서 경영·영업상 비밀에 직접적으로 해당
	세제과 세무과 38세금징수과	세무행정의 기본계획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지방세에 관한 부과·징수계획 수립·조정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특정인에 대한 지방세 심사결정서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서울시 공무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제6호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법인 등의 세외수입 관련 납세번호 내역, 금융기관 정보 [’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제7호	법인 등의 세외수입 납세번호 내역, 수납 금융기관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세 과세표준 운영을 위한 제출 의견</li> <li>●지방세 관련 감사원·조세심판원 등 기관별 의견조회에 관한 검토의견서</li> </ul>	제5호	미확정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시시비비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평 생 교육국	교육정책과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li> <li>※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li> </ul>	제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령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상대방측이 제출한 서류 및 제3자의 서면의견서</li> <li>[ '19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당사자의 학교 측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 조치사항 개요, 접수보고서, 조사보고서</li> <li>※학교 측이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 결과보고통지서는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li> <li>[ '19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피해자 측이 제출한 탄원서, 의견서</li> <li>[ '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 관련 가해자 측이 제출한 탄원서, 의견서</li> <li>[ '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li> <li>[ '19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li> </ul>		
관 광 체 육국	관광산업과	서울관광마케팅 전략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마케팅 사업비 정산내역서</li> <li>[ '18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li> </ul>	제7호	해외홍보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행업체의 국내외 거래선 및 거래단가, 창의적인 사업추진 세부내역 등 업체의 노하우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특화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컨벤션 콤플렉스 조성사업 제안서</li> <li>[ '15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li> </ul>	제7호	제안 단체의 사업추진전략 등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관광 체험프로그램 공모단체의 제출 서류 [’14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사업추진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해당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시 민 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li> </ul>	제1호	의료법 제21조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원 내 「사망환자 처리현황 보고」 [’14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1호	의료법 제21조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감염병전문센터 설치계획(안) [’18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의 기초적인 검토단계에 있고 공개될 경우 감염병 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약류 및 약품 관리현황 점검보고 [’20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4호	마약류 유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마약류 관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약 등의 취급 시설에 관한 정보</li> </ul>	제5호	공개 시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일으켜 마약류 취급 등과 관련된 감독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신건강과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재심사 요청 및 심사결과 자료</li> </ul>	제3호	공개 시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 검사 의뢰서, HIV 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li> </ul>	제6호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자료는 환자의 의무기록, 계속입원 등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안 전 총괄실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도 상가변상금 개인 부과내역 [’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개인의 부과내역은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인 형태로 공개가능
	도로계획과	도로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관련 최초제안서 [’20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제3차 제안공고 등 입찰계약 관련 과정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제7호	제안업체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개할 경우 향후 동종·유사사업 참여 시 경쟁업체가 제안업체의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됨으로써 제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제8호	최초제안자 제안서에는 세부 노선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 등을 유발하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도로관리과	도로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b>●국내 대사관 인접도로 정비 관련 보안협의</b> [’16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2호	공개 시 대사관의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외교마찰 등을 유발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b>●건축위원회 심의자료 중 설비 등 구체적인 내부구조가 포함된 도면</b> [’18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3호 제7호	공개 시 테러 등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b>●건축위원회 위원 (개인) 연락처</b> [’14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연락처는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b>●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관련 (수기로 작성된) 개별 자문의견서</b> [’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자문의견서는 수기로 작성된 문서로 공개할 경우 필적을 통해 작성자를 유추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방해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b>●(특정 건축물 대상) 사전재난영향성 평가 결과보고서</b> [’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3호	특정 건축물의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결과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되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심대한 위해를 끼쳐 공공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무허가 건물의 단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무허가건축물확인원</b> [’13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8호	요청 정보의 제3차 발급시 무허가 건물 거래에 악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표 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제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공표 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건축물 협의용 도서, 지구단위계획안 중 건축계획(안) [’18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제7호	협의용 도서, 건축계획(안)은 미확정된 도면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고, 설계자의 영업상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공공임대주택 열람공고 결과 (수기로 작성된) 주민의견서 [’18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성명, 연락처, 주소 부분은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이며, 의견내용은 자필로 작성되어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신청서 [’18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사업신청서의 부문별 계획, 건축계획, 자원조달방안은 미확정된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역세권구역 내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공표 전 역세권 재개발계획 및 도면	제5호 제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공동주택 지원과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공표 전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제5호 제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공표 전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21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주거정비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19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미확정된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 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19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용역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공정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요청 정보는 미확정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들에게 오해나 혼란을 불러 일으켜 공정한 용역업무 수행 및 연구개발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b>●재개발 조합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공문 및 입증자료</b> [’19년 제3차, 제14차 정보공개 심의회]	제4호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공정한 수사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b>●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b> [’20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감독기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감독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b>●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이주현장 관리카드</b> [’19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해당 구역 정비사업 종료 시 공개	제5호	공개 시 이주현장 감독 및 지 도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b>●재건축조합 정기총회 관련 공공변호사 참관보고서</b> [’19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미확정 내용을 공개 시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 비에 휘말리거나, 공공변호사 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 장을 초래하여 공정한 업무수 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b>●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상근인력자 명단, 상근인력자 자격증 사본</b> [’20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b>●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b> [’21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 해할 우려가 있음	
		<b>●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 입퇴사 현황</b> [’17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b>●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서울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b> [’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제7호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 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 한 자료로 공개할 경우 정당 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 음	
	재정비촉진 사업과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b>●재건축구역 사고 수습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 결과</b> [’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제6호 제7호	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 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 및 특정인의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이해관 계자(조합, 조합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 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제출한 원가자문 설계도서 [’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li> <li>●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li> </ul>	제5호 제8호	<p>원가자문 업무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p> <p>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p>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곽마을 앵커시설 부지매입 현장조사 결과보고</li> <li>●성곽마을 앵커시설 부지매입 추진방안 [’16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8호	미확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주 거 환 경 개 선 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빈집실태조사 세부목록 현황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조건을 부기->(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빈집실태조사 세부목록 현황	
	빈집 매입 관리에 관한 사항	●매입빈집 현황	제5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 등을 위해 매입 활용하고 있는 빈집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건축물 안전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사항	●민간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3호	건축물 구조에 대한 세부정보 및 다수의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악용되어 국민의 생명 등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민간시설 재난대응 매뉴얼, 사전 재난 영향성 평가결과보고서 [’15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				
한옥정책과	우수한옥 인증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관련 미인증 한옥에 대한 내역 [’19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미인증 한옥에 대한 내역은 공개 시 한옥 소유주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한옥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한옥수선 등에 따른 개인별 비용지원 현황 [’13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별 비용지원 현황(지번, 금액, 지원 내역)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음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자명단 및 회의자료 [’22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제1호 제5호 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시행령 제113조의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에 의하여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도시발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b>●서울역 미래비전 수립 용역보고 결과</b> [’19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미확정 사항으로 중앙정부와의 구체적 논의 등이 필요하며,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으므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b>●서울도시기본계획(안)</b> [’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미확정된 자료로,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 심의를 득하고 계획 확정 후 공개
		<b>●도시기본계획 미래상 설문조사 결과</b> [’13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제8호	설문조사 대상으로 포함된 지역의 개발계획이 사전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b>●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b>	제5호 제8호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및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신속통합기획과	신속통합기획 준비에 관한 사항	<b>●신속통합기획(안)</b> <b>●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회의록 중 자문내용</b>	제5호	미확정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b>●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착수보고 회의내용</b> [’15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미확정된 내용이 공개되어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b>●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회의 결과보고</b> [’21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제4호	현재 진행 중인 공원부지취소 소송 등 각종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소송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b>●저이용 도시계획시설 종류, 수, 면적</b> [’19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제8호	시의 정책방향 수립 이전 단계로서, 미확정 사항의 공개로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는 바,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내 각 도시계획시설별 대상지가 한정되어 있어 종류·면적의 공개만으로도 대상지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토지관리과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b>●학교 이적지 및 미집행 학교시설 현황</b> [’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8호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되어 사전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b>●특정 지번의 매매가</b>	제3호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b>●개인별 토지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b> <b>●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감정평가내역</b> [’16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3호 제6호	수용재결 감정평가결과는 개인의 재산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 시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b>●수용보상거래 세부정보</b> [’15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 또는 단체 등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자의 사적 활동에 속함
균형발전부	도시심재창조과	도시재생정책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b>●도시정비상버 중 직권해제 예정지역 현황</b> [’1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제8호	직권해제 예상지역 및 판단근거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해당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도시정비과 비공개 대상정보와 동일
도시정비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b>●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부결 사업지 심의자료</b> [’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청구인에게 이미 열람 공개한 사안에서 미확정 사항을 별도 파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b>●도시정비사업 중 직권해제 예정지역 현황</b> [’1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제8호	직권해제 예상지역 및 판단근거는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해당 업무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서 부 권 사 업 과	서북권·도심권 발전 기본구상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b>서부운전면허시험장일대 발전 기본구상 실무자 회의 결과보고,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발전 기본구상 공정회의 결과보고</b> [’20년 제11차,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제8호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검토과정 중에 있어 공개될 경우 내부검토 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광화문광장 사 업 과	광화문광장 도로·교통·안 전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b>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교통자문회의 내용</b> [’19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미확정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행정기관 간에 자유롭고 솔직한 의견 교환을 어렵게 하고, 시민들에게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동 남 권 사 업 과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 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3차 제안공고 전) <b>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보고서(KDI PIMAC)</b> [’20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7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제3차 제안공고 이전에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경우 경쟁업체가 제안사의 기술·경영상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에 있게 됨으로써 제안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제3차 제안공고 전) <b>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중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채택(안)</b> [’20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제7호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제안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푸 른 도 시 여가국	동물보호과	가축 등 동물 질병 방역대책 수립	● <b>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원</b>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비공개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6항
물순환 안전국	수 변 감 성 도 시 과	하천의 미지급보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특정 개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분쟁에 대한) <b>하천손실금 관련 판결문</b> [’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으로서, 요청 정보 내에는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소송 상대방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소 방 재 난 본 부	소방행정과	본부 소관 인사에 관한 사항	● <b>소방공무원의 징계 회의내용 및 징계결과</b> [’19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1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8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서별 현장지휘관 입직경로 [’19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난대응과	구조·구급활동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구급활동일지 중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제3자 서명 [’18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의 구급활동일지 [’16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환자 및 신고자 인적사항, 환자상태에 대한 평가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당사자 등으로부터의 위임관계가 확인된 바 없으므로 비공개
예 방 과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li> </ul>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국가보안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시공·완공, 소방시설설계·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축 고층건축물 대상 관내 소방서의 인허가, 동의한 자료 및 준공허가 승인 상세자료 등 [’18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폭발물, 인화성 물질,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세부도면 및 구조도</li> </ul>	제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 관련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유소의 지하탱크저장소 구조설비 명세표, 오염토 정화 토목공사 도면 [’14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 보유시설 위치, 세부도면, 구조도</li> </ul>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철역사 대상 관내 소방서가 실시한 소방감리보고서, 종합정밀점검결과 [’18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3호	공개 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등 공공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산망 구축 내역, 소방방화셔터 위치 현황 등이 기재된 국가중요보안시설 소방점검확인서 [’19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2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를 위해 작성된 문건으로 공개되어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면 해당 시설의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b>●소방대상물 점검 확인자 성명, 연락처, 전문인력 자격번호</b> [’17년 제14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b>●화재 사건 관련 관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내역</b> [’21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개인에 대한 부과 내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현장대응단	화재의 원인 및 화재피해의 조사	<b>●화재사건보고서 중 감식기법 및 방화방식</b> [’18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4호	공개 시 모방범죄를 유발하여 범죄예방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
			<b>●화재조사보고서 중 관계자 및 목격자 진술내용</b> [’18년 제3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진술자 및 사고 당사자 등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난현장 지휘체계 및 통제에 관한 사항	<b>●화재현장 영상파일</b> [’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관계자 개인의 얼굴 등은 공개 시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음
			<b>●화재 진압 무전내용</b> [’15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목소리를 포함한 음성은 소방작업 수행에 필요한 무전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소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서종방센터	종합상황실	구조·구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b>●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b>	제1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b>●119 신고녹취록 및 무전녹취자료</b> [’21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제2호 제3호 제6호	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신고자의 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상수도 배관관리 및 배급수에 관한 사항	<b>●상수도관 배수관망도</b>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b>●급·배수 계획</b>	제2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b>●취수장, 정수장의 도면, 구조도</b>	제2호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요금관리부	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요금이 기본요금 부과된 주택, 건물, 사업장의 상세지번 [’18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수도 사용여부는 소비자 또는 거주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음
	수도사업소	배급수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별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 [’18년 제1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는 개별 급수관 관리세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 시 각 세대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자 성명, 주소 [’14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공적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아 리 수 정 수 센 터	수돗물의 생산·수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li> </ul>	제2호	정수시설은 국가보안시설이며 해당 매뉴얼은 대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을 포함,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생명수인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매뉴얼이 공개될 경우 대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및 복구에 관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원활한 물적·인적 동원의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수센터 시설물 보존계획 도면</li> </ul>	제2호	통합방위법, 통합방위지침,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련에 의거 정수장은 파괴되었을 경우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도 시 기 시 본	도 목 부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확장공사 업체별 평가결과 자료 [’18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심사위원 검토의견서(종합적인 평가자료)에는 구체적인 실적과 업체별 강약점에 대한 개별판단이 포함되어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으며, 동종 심사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심사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
한 사 본	운 영 부	매점·전망카페·점터 등 공원편익시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강공원 매점설치 관련 입찰자들이 제출한 문서 [’13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사업계획 및 재무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 노하우와 전략 등 법인의 경영·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임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시 보유 관공선 중 도강예인선, 도강부선의 관리비용, 운행일지</li> </ul>	제2호	도강예인선과 도강부선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시대비시설이므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14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면접시험의 평가는 단순 수치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총합적인 평가 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공개될 경우 면접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li> </ul>	제5호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li> </ul>	제5호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주고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여 공정한 시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li> </ul>	제6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시립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환자의 간호 및 위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li> <li>●병원 내 사망환자 처리현황 보고 [’14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1호	의료법 제21조
		의약품의 수급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약류 및 약품 관리현황 점검보고 [’20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4호	마약류 유출 범죄 등에 악용될 경우 마약류 관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의료장비 수급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장유형분석(FMEA) 결과 보고 [’17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5호	잠재적 오류유형별 구체적 회의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오류유형 발굴·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구성원의 `자율적인` 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개 시 자율보고의 기피 등으로 안전사건 예방 및 개선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여센터	동부공원 중부공원 서부공원	공원 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특정 다수인이 촬영된 공원 내 CCTV 영상 [’18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공개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초상이 유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점검 대상지 상세주소	제6호	특정 동·호수는 공개할 경우 입주예정자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시설, 장비, 재산관리	●서울시 도서관 용도변경 도면 [’19년 제18차 정보공개심의회]	제2호 제3호	건물 구조의 세부 수치 등이 공개되어 테러·범죄 등에 악용되면 다중이용시설의 청사방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서울대공원	동물원	관리 동물의 사육에 관한 사항	●서울대공원 돌고래 관리 위탁계약서 [’18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공개 시 궁극적으로 대상 개체의 안전한 위탁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우려가 있음
시의회	입법담당관		●광역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의 경력 [’18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경력사항은 개인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음
	의사담당관		●의원 제출 청가서 및 결석계 [’19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기타	부서 공통	다른 법률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 거래내역	제1호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제1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
		주요시설 관리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제3호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제5호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제7호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확정된 명단은 심사수행 후 공개</li> </ul>	제5호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시 위원별 부여한 점수 및 평가 내용 ※개별 위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li> </ul>	제5호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li> </ul>	제5호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산업기술</li> </ul>	제5호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개발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확정 전 사업검토서 ※ 사업 확정 후 공개</li> </ul>	제5호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li> </ul>	제5호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전화번호(개인용)</li> </ul>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주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이메일 주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li> </ul>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계좌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li> </ul>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li> </ul>		제6호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li> </ul>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과 통화 시 녹음한 음성파일 [’19년 제16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청구인만이 아니라 공무원이 통화당사자로서 개인 음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할 경우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대전화번호(개인용)</li> </ul>	제6호	공공업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택주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장계좌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이메일 주소</li> </ul>	제6호	공공업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문회의 서명부 [’19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6호	개인의 서명은 공개 시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력 및 경력 ※공인의 직무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li> </ul>	제6호	공공업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사실 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납세내역</li> </ul>	제6호	공공업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 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검진 및 의료기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병역기록</li> </ul>	제6호	용역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업체이지, 업체 직원이 아니며, 용역사명과 참여인력의 이름을 결합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역사업에 참가하는 위탁업체 참여인력의 이름 등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li> </ul>	제6호	공공업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일반시민에 관한 정보	●성명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보를 부모가 요청하더라도 미성년자 자녀의 공개 의사를 확인한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아동학대, 친권소멸 등의 경우를 고려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제6호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학력 및 경력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자격증 소지 여부		
		●종교		
		●범죄사실 기록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급여압류자 성명 [‘14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재산 및 채무 현황	제6호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각종의 주민동의서		
●복지센터 입소 관련 기록				
●개인별 보조금 수령여부 및 지원비용 ※전체 현황 통계자료는 공개 가능				
●비교견적서에 표시된 개인사업체의 업주명, 연락처 [‘20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제6호 제7호	비교견적서는 탈락업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생활 침해만이 아니라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인 등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및 약력	제6호	단체의 가입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개인의 신념 등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법인, 단체, 기업, 개인사업자 등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li> </ul>	제7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법인 등의 정보로서 공개 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로 상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단법인의 사원명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사업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급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자 신용조회 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li> </ul>	제7호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li> </ul>	제7호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li> </ul>	제7호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산업기술</li> </ul>	제7호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자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li> </ul>	제7호	공개할 경우 해당 법인 등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li> </ul> <p>※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통계적 형태로 공개 가능</p>	제7호	공개할 경우 탈락업체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영업상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구체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용역 수행기관 인사·조직 등 내부정보</li> </ul>	제7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운영상의 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교견적서에 표시된 미선정 사업자(업체) 식별 정보 [’20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구매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품목, 단가 내역에는 당해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경쟁업체에서 다른 계약에 이를 이용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단법인의 잔액 증명서 [’18년 제21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잔액 증명서(재산보고 현황)는 금융거래정보로서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 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신고필증 내 해외거래처 정보 [’15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li> </ul>	제7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업체 등의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예치기관 및 계좌번호, 예치기관별 예금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현황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세부적인 변동사항 및 운용방법</li> </ul>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기속력이 없으며, 비공개 결정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